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1. 3. 16.>

계 좌 개 설 (변 경) 신 고 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
신고인	상호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사업장소재지/주소	(전화번호:)		
구 분		□ 계좌신고 □ 계좌변경		
		당초	변경	
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				
계좌번호				
변경사유				
신고세목		□ 모든 세목 □ 종합소득세 □ 부가가치세 □ 법인세 □ 그 밖의 세목 (세)		
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(변경)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(변경)한 위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송달하지 않습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생년월일:) 관계(직책):

주 소 전화번호 :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통장 사본 1부 2.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. 위임장 원본 1부 ※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